

〈서 면 답 변 서〉

○ 이준영 위원(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1호 2000. 11. 21)

《질 문》

2000년도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개소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와, 향후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.

《답 변》

-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의 2는 1급방화관리대상물, 위험물제조소, 화재경계지구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서는 1년에 1회의 소방검사를, 그 외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2년에 1회의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-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서에서는 금년 소방검사대상 58개소(2000년 설치허가된 대상 11개소(주요소3, 저장소3, 판매소5)와, '99년소방검사대상 61개 제외)의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9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,
- 이 중 29개 대상을 적발하여, 시정보완명령을 발부(28개소) 및 과태료 부과처분(1개소)을 하였으며, 2개 대상에 대하여서는 기관통보를 하였으며, 2개 대상을 입건하여 사법처리하였습니다.
- 말씀하신 것처럼, 점검 총수량이 272개소라고 된게 된 것은 지난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, 우리서 관내의 이동탱크차량 21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이 정기소방검사대상 58개소에 합하여진 때문입니다
- 지난 4월의 이동탱크 214개에 대한 점검에서는 3개소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.
- 또한 9월 한달 동안, 무허가 위험물의 취급가능성이 큰 주차장, 차고, 세차장, 창고, 공장 등에 대하여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실시하여 (주)하이테크 등 5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추진중입니다.

- 위험물 시설에 대한 향후 안전관리는 소방안전교육, 정기소방검사,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의 행정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위험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

※ 우리 시에서 허가된 위험물 제조소 등은 총 563개이나,

- 이 중 소방검사시 위험물 시설로 분류되는 위험물 저장취급소(11개), 위험물 주유취급소 (80개), 위험물 석유판매취급소 (39개)는 130개소이며,
- 위험물전용시설로서 분류되지 않는 위험물 일반취급소 (301개), 위험물 이동판매취급소 (132개)는 434개소입니다.

* 또한 1999. 10. 31. -2000. 10. 31.까지 허가된 시설은 총 83개소로서

- (위험물 저장취급소(3개), 위험물 주유취급소(3개), 위험물 석유판매취급소(9개)는 15개소이며,
- 위험물 일반취급소(19개), 위험물 이동판매취급소(39개), 이동탱크저장시설(10개)은 총 68개소입니다.

<무허가 위험물 취급적발업체 현황 >

대 상	위 치	위 법 사 항
(주)하이테크 대표이사	과주시 월릉면 덕은리 648-1번지	- 그라비아잉크 480 ℓ - 톨루엔 200 ℓ - 메탄올 40 ℓ
스칼렛화장품 고경석	과주시 탄현면 범흥리 493번지	- 에틸알콜 400 ℓ
(주)광진섬유 문광한	과주시 과주읍 부곡리 175-1번지	- 방카씨유 5,400 ℓ - 경유 600 ℓ
서영기업 조영철	과주시 광탄면 분수리 99-20번지	- 방카씨유 7,000 ℓ - 경유 2,000 ℓ
맥워싱 이봉성	과주시 광탄면 분수리 20-17번지	- 방카씨유 6,000 ℓ - 경유 4,400 ℓ

《질 문》

과주소방서에서 무허가 위험물 단속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소 5개소를 적발하였는데 적발된 업체의 현황과 조치사항, 향후 무허가위험물 저장·취급 업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.

《답 변》

- 금년 우리서에서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, 무허가 위험물의 취급가능성이 큰 주차장, 차고, 세차장, 창고, 공장 등에 대하여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실시하여 (주)하이테크 등 5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.
- 이들 5개소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소방법 위반사범으로 사법적, 행정적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.
- 무허가 위험물취급 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은,
 - 소방법 위반사범이 양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,
 -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나,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, 방화관리자 교육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소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, 무지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,
 - 고의적 악의적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위험물의 취급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《질 문》

군 부대의 소방안전의 소방법상의 근거와 실적·점검내역·교육실적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《답 변》

- 소방법 제30조의 특수장소의 기준에 의거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.
- 하지만 군 부대의 응급처치교육 및 각종 교육시 군 관계자와 협의 또는 요청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
- 금년도 8개소의 군 부대에 응급처치등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다른 화재예방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.
- 군부대의 중점점검 사항은
 - 소방시설의 작동유무

- 전기, 가스등 시설의 안전 여부
- 유류 보관상태 등이며

○ 불량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조치할 근거가 없어 시정 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

《질 문》

영세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 실적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《답 변》

- 저희 서 관내의 재래시장은 금촌시장, 법원시장등 2개소가 있으며, 금년 8월 중 추절 대비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였고,
- 10월에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판매시설에 대한 점검시 재래시장 2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
- 점검결과 금촌시장은 시장 통로상의 간이천막 설치사항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조치하였고,
- 법원시장은 상가내 중앙통로의 상부가 목조 스래트로 연결돼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초록 하였습니다.
- 또한 11월 말경에는 유관기관(시청, 가스, 전기, 시민단체)과 합동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

《질 문》

유흥주점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불량사항 중 기관통보사항은 무엇이며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하고 기관통보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.

《답 변》

- 이번 특별 점검 결과 기관통보한 사항은 4개업소 4건이었으며,

- 기관통보 업소별 현황은 노래방 2개소, 지하에 있는 일반음식점 2개소입니다.
- 위반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인 (숲속의 빈터) 1 개소는 비상구 통로 입구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화재등 사고시 비상구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철거 조치하도록 관계부서(과주시청 건축과)에 통보하였으며,
- 또 다른 일반음식점 (SKY)는 룸 3개소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영업 중에 있어 허가청인 시청 사회복지과에 통보 하였고,
- 나머지 2개소는 노래방(신나는 노래방, 뮤직파워)으로 주출입문에 방화문을 미설치한 곳입니다.
- 이곳 노래방들은 소방법규 시행이전(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)의 허가 업소로 현행 소방법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나, 건축법규상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 것입니다.
-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은 지하층 또는 3층이상의 층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관련근거
 - ⇒ 건축법 제 39조(건물의 피난설비)
 - 건축법 시행령 제46조(방화구획의 설치)
 -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(방화문의 구조)